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77 발의연월일: 2024. 10.14.

발 의 자:전현희·김용민·정청래

박홍배 • 박균택 • 홍기원

윤종군 • 이학영 • 이성윤

박지원 • 이정문 • 남인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가 다룰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사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타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는 동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으나, 동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권한이 인정되지않음.

그러나 통상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증인의 불출석과 위증의 죄를 달리 취급하여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구분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특히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와 관련하여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청문회가 형해화되는 경우가 많아 불출석의 죄 역시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포함시켜 엄중히 취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수처 수사 사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 불출석 등의 죄를 포함시켜, 청문회의 효용을 높이고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국회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고자 함(안 제2조제 3호사목 개정).

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 중 "제14조제1항의 죄"를 "제12조 및 제14조제1항의 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최초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	3		
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			
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			
다.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u>제14조</u>	등에 관한 법률」 <u>제12조</u>		
제1항의 죄	및 제14조제1항의 죄		